



## ◆사업자-소비자 거래에 관한 일반법」(소비자거래법)

공정위, 2013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발표

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13년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마스터플랜이 되는 ‘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.

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, 16개 광역자치단체,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.

이번에 수립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의 비전은 ‘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’이며,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,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,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의 활성화, 소비자 피해의 신속·원활한 구제,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 등이 기본방향으로 제시되어 있다.

주요 세부 추진과제를 살펴보면,

**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** △ 소비자거래법 제정 추진 △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△ 신고빈 발 대부 중개업자 명단 공개 △ 스팸정보 차단 및 악성스파머의 통신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게 된다.

**안전한 소비환경 구축을 위해서는** △ 제조물책임법 개정 △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확대 △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확대 △ 지역약물감시센터 지정을 확대하게 된다.

**소비자 정보제공 활성화를 위해서는** △ 상품 비교정보 제공 대상 품목을 단순 소비재에서 내구재, 서비스상품으로까지 확대하고 환경·윤리적 기업 정보도 함께 제공 △ 정보 제공 이후 소비자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.

**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해** △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 도입 △ 소비자 손해배상소송 지원대상 확대 △ 소비자중심경영 (CCM) 평가기준을 성과 위주로 개편하게 된다.

**소비자와 기업의 상생기반 조성을 위해** △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 방안 추진 △ 기업의 소비자친화적 경영을 유도하게 된다.

공정위는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정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소비자원,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 시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한 해 동안 추진할 소비자 정책 과제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, 모든 정책과제가 충실하게 추진될 경우, 소비자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되고 ‘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’이라는 비전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(끝)